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26
----------	------

2026년 4월 22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4월 6일, 이소라 의원 등 12명
2. 회부일자 : 2026년 4월 7일
3. 상정일자 :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4월 22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소라 의원)

1. 제안이유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모든 학생의 육반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

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아.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III.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6년 4월 6일 이소라 의원 등 12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3626호로 공동발의되어 2026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동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됨.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임¹⁾.
-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기초학력 미달 등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학생 지원²⁾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³⁾.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 2026.3.1.][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 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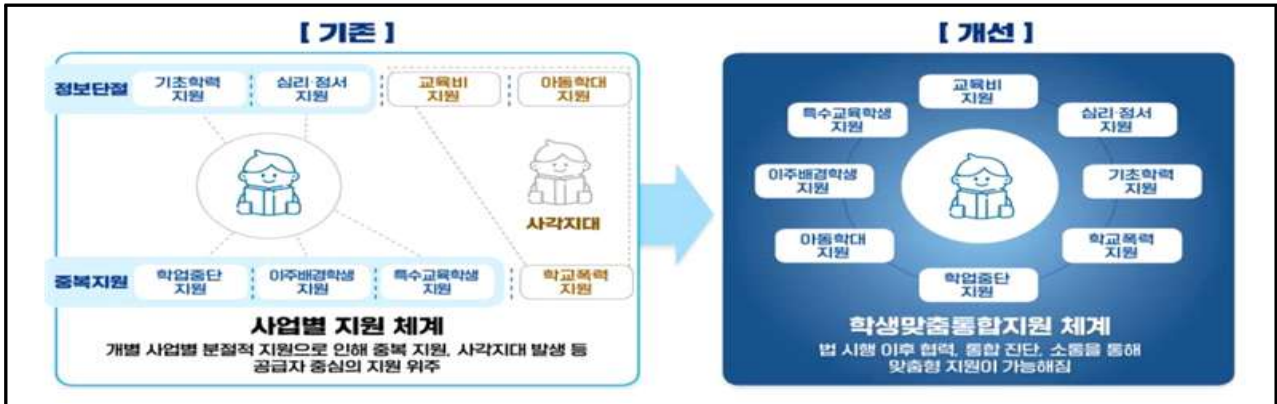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 ~ 5. 생략

2) < 학생 지원 개별 사업 >

[그림-1] 학생 지원 체계 변화



출처: 교육부(2026.2.).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안).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2년 12월에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을 지정·운영하였음.
- 이후 2025년 1월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 2026.3.1.][법률 제20671호, 2025.1.21., 제정]」(이하 ‘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지원)청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교육부가 연계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
- 더욱이 2026년 3월 1일부터 동 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원은 서울시 초·중·고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에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학업지원	심리정서지원	복지지원	안전지원	기타지원
- 기초학력 - 학업중단 예방 - 대안교육 - 미인정결석	- 위 (wee) 프로젝트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복지안전망 - 교육비, 교육급여	- 아동학대 예방 - 학교폭력 예방 - 성희롱·성폭력 예방	- 아주배경 - 특수 - 학생건강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2026.2.).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2026.2.).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안).

이에 교육부는 2026년 2월에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한 상황임.

- 이와 같이 동 조례안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법에 근거해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됨.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것으로 목적과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안 제5조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을, 안 제8조는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경비의 지원, 안 제13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4조는 비밀 유지의 의무, 안 제15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항),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각 호4)에 규정하고 있음(안 제2항).

- 그리고 교육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부합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안 제3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안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항).

- 이와 같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2022년 교육부 국정과제(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⁵⁾ 중 교육 사각지대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합동으로 ‘[발굴]-[지원]-[연계]’를 통한 학습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4) 1.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및 세부 추진계획
 3.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운영 및 통합·연계
 4.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 등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의체, 지원단 등 구성·운영
 6.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보급
 7.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배치
 8.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례발굴
 9.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지원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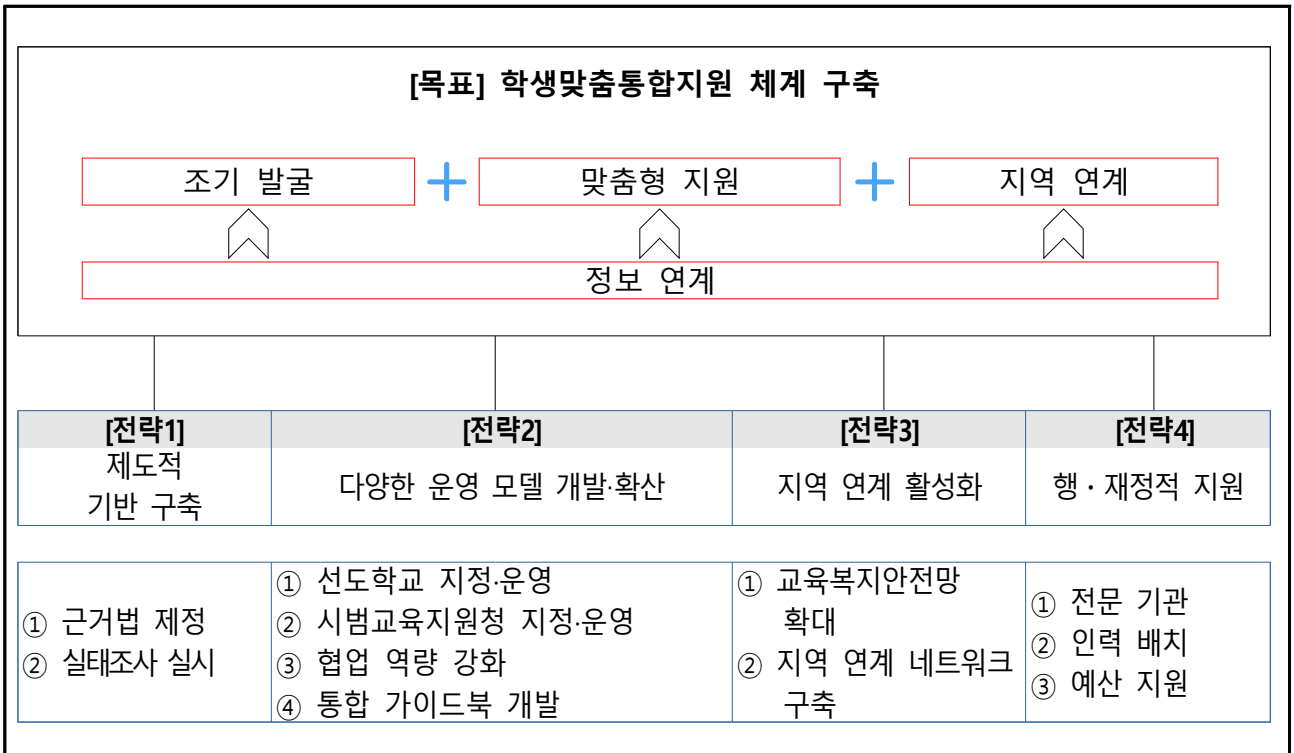
5)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5.).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 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마련(~ '26)

방안(안)’을 마련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운영 모델 개발 및 확산, 그리고 지역 연계 활성화, 행·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음.

[표-1] 2022년 교육부 및 교육청 합동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목표 및 전략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서울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해 왔는바⁶⁾, 2023년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하였고⁷⁾, 2024년 및 2025년에는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을 안착시키기 위해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차원의 계획이 구분되어 수립되었음.⁸⁾

6)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2024.2.). ‘2024학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2025.4.). ‘2025학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2026.2.).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7)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2023.4.). ‘서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2023년 시범청 및 선도학교 운영 중심으로-’.

8)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2024.2.). ‘2024학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2025.4.). ‘2025학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 이후 법이 제정(2025년 12월)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개별적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통합적인 학생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4항)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기본방향 및 목표, 체계, 그리고 사업 운영 및 통합·연계, 협의체 구성·운영 등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사료 됨.
- 한편 안 제5조제3항은 교육장으로 하여금 교육청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교육지원청 여건에 부합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진로, 심리·정서, 건강·안전,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인바,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의 정책 방향 및 학교 적용 방안,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생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는 등 현장 지원에 있어 역할이 중요함.
- 더욱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도 교육지원청은 교육청과 동일한 수준의 위원회 및 센터 등을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⁹⁾, 안 제

9)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략

제8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생략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장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5조제3항은 교육장에게 교육청의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학생맞춤통합 지원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시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 생각됨.

3) 위원회에 대한 검토(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안 제6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교육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안 제1항),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안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10) 사람 중에 되며(안 제3항), 그 밖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안 제4항)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안 제7조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2.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3.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③ ~ ⑥ 생략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5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략

제8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생략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 10) 1.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안 제1항),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장으로 하고(안 제2항),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¹¹⁾ 사람 중에 되며(안 제3항), 그 밖에 지역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안 제4항)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교육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은 법 제5조제1항¹²⁾ 및 제6조제1항¹³⁾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인바, 동 조례 안에서 ‘교육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법 및 같은법 시행령^{14) 15)}에서는 교육청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
- 11) 1.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교육지원청 관할 자치구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교육지원청 관할 자치구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1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5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시·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략
- 1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략
- 14)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3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이 되며,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것으로 입법 체계상 시행령의 내용이 개정·폐지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을 경우 조례의 효력에 대한 다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경제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법제처 2012.6.29., 회신 의견 12-0179참조)도 있는바,

자치법규에 상위 법령과 동일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5) 제5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군 및 자치구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시·군 및 자치구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4)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는 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학교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학교 내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항)
 - 또한 학교장은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1항 각 호의 지원 간 연계를 담당하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협의체를 제1항에 따른 기존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와 통합·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항).
 - 아울러 안 제1항 및 안 제2항에 따른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회의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분기별·월·주간 단위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항).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진로, 심리·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 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지원의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표-2] 학생 지원 영역¹⁶⁾

영역	내용
학습·진로 지원	· 기초학력 지원, 학업중단 예방(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진로,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등
심리·정서 지원	·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심리·정서 안정, 치유 및 회복 지원 등
건강·안전 지원	· 학교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지원, 학생 건강개선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등

16)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담당관(2026.2.).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4페이지.

영역	내용
복지 지원	· 서울형교육복지 · 교육복지안전망 제공,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등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통해 학교 내 다양한 위원회 및 협의회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3]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세부 추진 계획(1순위)¹⁷⁾

1.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1-1.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p>[학교 실정에 맞는 협의체 구성] ※ 학교의 실정에 따라 아래의 ① ~ ③을 모두 운영하거나 택 1~2하여 운영하는 등 공동체 논의를 효율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가능함.</p>
<p>① 각종 위원회 활용·통합: 학생의 상황에 따라 각종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일 경우, 기존 위원회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마음건강위원회 등 통합·활용 권장 ■ 교육복지·학생상담·기초학력 지원 등과 관련된 교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 가능 <p>※ 위원회 명칭이 '학생맞춤통합지원팀(위원회)'일 필요가 없으며 기존 위원회 활용</p>
<p>② 부장협의회·학년협의회 활용: 지원대상학생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정기회의 시간을 통해 운영</p>
<p>③ 유연한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회 구성: 지원대상학생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하거나 위중한 경우 등 운영</p> <p>※ 학생의 사안에 따라 교장(감)이 협의회 참석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시 운영 등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음</p>

○ 따라서 안 제9조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기존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생통합지원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17)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담당관(2026.2.).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6페이지 재구성.

5)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대한 검토(안 제10조, 안 제11조)

○ 안 제10조는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이러한 센터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 제8조제1항¹⁸⁾은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센터를 ‘설치’ 할 수 없을 경우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법 제8조제2항¹⁹⁾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앞서 살펴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하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센터를 ‘설치’ 할 수 없을 경우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학생맞

18)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8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2.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5.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 ⑥ 생략

19)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8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생략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장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2.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3.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춤지원담당관’에 “서울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협력과’에 “지역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²⁰⁾.

- 또한 법 제8조제6항²¹⁾은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식 외에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하여 운영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정 및 운영 지원 등의 기준·절차를 조례로 구체화하려는 것인바, 법적 근거와 법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함(행정관리담당관-4618, 2026.4.13.).

6)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2026.4.10.~2026.4.14.) 중 총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 제출된 의견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향후 시행 과정에서 부담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 관점에서 제출된 것임.

20)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담당관(2026.2.).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9페이지.

2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8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 ⑤ 생략

⑥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가 학교 현장에서 특정 개인이나 직종의 추가 업무로 해석되지 않도록 인력·구조·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
- 2)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담 인력의 정의 및 지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것
- 3)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교 내부 지원 역량과 외부 연계 체계 간의 역할 관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
- 4)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 운영이 특정 교직원에게 업무 가중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 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것
- 5) 센터 운영은 학교 지원을 보완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센터 활용이 외주 또는 단기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
- 6) 협력체계 구성시 정보 고유의 범위와 경계, 학생 및 보호자 권리 보호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7)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수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

- 이는 향후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 시행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고, 인력 운영 기준, 역할 범위, 기관 간 협력 체계 및 책임 구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또는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지원체계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및 세부 추진계획
3.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운영 및 통합·연계
4.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 등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의체, 지원단 등 구성·운영
6.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보급
7.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배치
8.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례발굴
9.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지원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부합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교육지원청 관할 자치구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교육지원청 관할 자치구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9조(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의 연계를 담당하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와 통합·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정기회의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분기·월·주간 단위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서울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감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필요한 기준의 부합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 해당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업무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서울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등 연계 방안
3.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4.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장과 학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표창)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학교,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

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